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화학물질등록평가법)

[시행 2019. 1. 1] [법률 제15844호, 2018. 10. 16, 일부개정]



환경부(화학물질정책과) 044-201-6783

제10조(화학물질의 등록 등)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(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0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(이하 "등록유예기간"이라 한다)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·수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0.>

1. **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, 돌연변이,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21년 12월 31일**

2. **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24년 12월 31일**

3. **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**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20.>

1. 화학물질의 명칭

2.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

3.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

4. 화학물질의 용도

5.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8. 3. 20.]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 1. 1] [대통령령 제29413호, 2018. 12. 24., 일부개정]

제10조(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)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**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27년 12월 31일**

2. **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: 2030년 12월 31일**

[전문개정 2018.12.24]